



**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항공철도사고조사법
시행규칙)**

[시행 2013. 2. 28] [국토해양부령 제571호, 2013. 2. 28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(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) 044-201-5448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2. 28.>

제2조(항공·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)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·철도사고등의 발생사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통보해야 하는 항공·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3. 2. 28.>

1. 경량항공기 조종사(조종사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량항공기의 소유자)
2.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(조종자가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)

제3조(통보사항)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항공·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항공사고등
 - 가. 항공기사고등의 유형
 - 나. 발생 일시 및 장소
 - 다. 기종(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 - 라. 발생 경위(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 - 마. 사상자 등 피해상황(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 - 바.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
 - 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
2. 철도사고
 - 가. 철도사고의 유형
 - 나. 발생 일시 및 장소
 - 다. 발생 경위(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 - 라. 사상자, 재산피해 등 피해상황(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 - 마.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(통보자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 - 바. 통보자의 성명 및 연락처
 - 사. 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통보시기)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자는 항공·철도사고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, 제3조에 따른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3. 2. 28.>

제5조(통보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공·철도사고등의 발생통보는 구두, 전화, 모사전송(FAX)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2. 28.>

② 제1항의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, 모사전송번호,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제6조(국가기관등항공기 사고발생 통보)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사고 발생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.

제7조(증표)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서식과 같다.

제8조(수당 등의 지급)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장·위원·자문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 <제571호, 2013. 2. 28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